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17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체납액 유무 검토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조건을 완화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사용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사용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 입안원칙, 위임범위에 맞게 조문 정비

1) 법령 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4조·제6조)

가) 보조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재기재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법 제32조의2제6항~제8항 재기재

다) 실비보상 :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2) 정비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완화함(안 제13조제5호)

1) 삭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검토

2)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남

다. 지방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1) 지방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호, 위임행정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담당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26.~10.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4조·제9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제1호 중 “위배”를 “적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2(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삭 제>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유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삭 제>
<신 설>	제16조2(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